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95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송재봉 · 서영교 · 임미애
전진숙 · 추미애 · 이연희
박홍배 · 황명선 · 이주희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에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등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송 등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예컨대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아동과 보호자는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③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다)을 받은 아동의 보호자등은 아동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신청하는 경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다)을 받은 아동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아동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를 포함한다)을 받은 아동의 보호자등은 아동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 -----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